

조직홍보위원회 규정

제 1 조 본회 정관 제 4 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조직홍보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를 둔다.

- (1) 학술적 회합의 개최에 대한 협조
- (2) 본 학회의 자립운동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확장
- (3) 종신회원수 증가를 위한 활동
- (4) 학회 홍보용 인쇄물 및 홈페이지 관리
- (5) 기타 기금 조성 및 그 확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위원장 1명

상임위원 약간명

실무위원 약간명

제 3 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제 4 조 위원장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5 조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. 임기는 당해년도 1 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.

제 6 조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 7 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